알기 쉬운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 건강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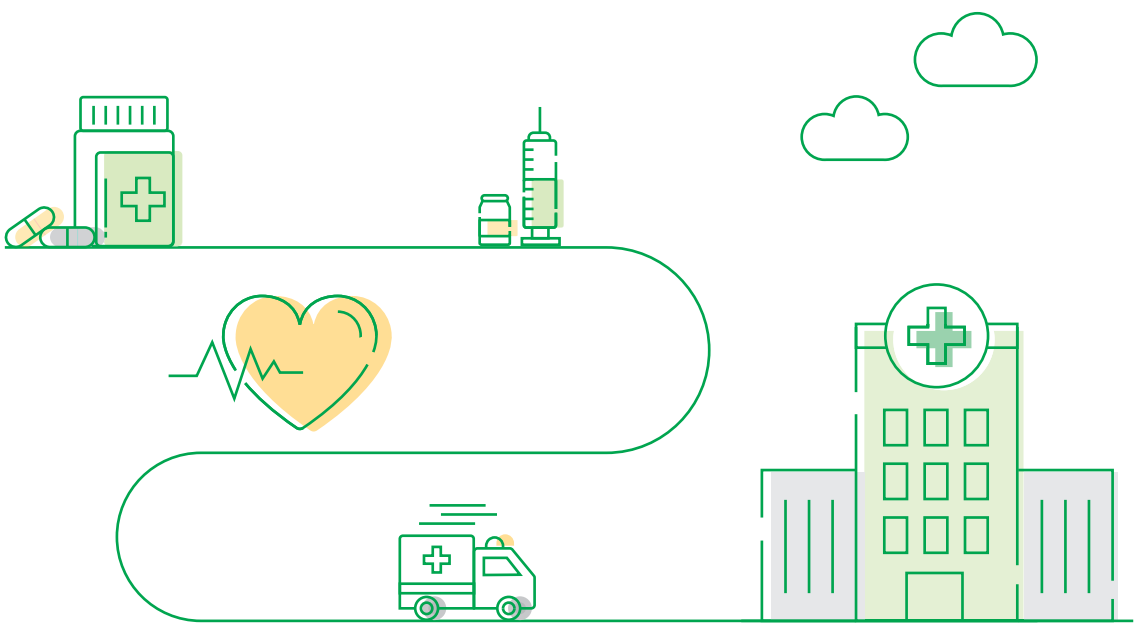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

CONTENTS

알기 쉬운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건강 가이드북

Ⅰ.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04

❶ 병원 생활 및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07
❷ 병원까지 오시는 데 많이 힘드시죠? 11
· 물리·작업치료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11
·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13
·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고싶을 때 15
· 가정에서의 보장구 취형, 제작을 원할 때 17
· 자꾸 깜빡! 잊어버리시나요? 19
❸ 노후된 집을 수리하고 싶으신가요? 21
❹ 중앙보훈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원하시나요? 23
❺ 맞춤형 보장구 제작,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25

Ⅱ.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32

❶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33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33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43
·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57

Ⅲ.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60

❶ 어르신들,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61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61
·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6
·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68
· 치매가 걱정될 때 70
·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72
·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76
·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80

❷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82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82
·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85
·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90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95
·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99
·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102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106

Ⅳ. 만성질환 예방관리 108

❶ 내 손 안 똑똑! 만성질환 예방관리 109
·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당뇨 109
· 심장내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고혈압 111
· 신경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치매 116
· 비뇨기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전립선 비대증 120
· 신경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두통 123
· 안과 전문의와 알아보는 노인성 백내장 127

Ⅴ. 부록 130

·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 가요? 131

알기 쉬운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건강 가이드북

1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

·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란?
·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종류
·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절차
·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이용안내

1.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란?

환자의 생애주기별(예방-치료-재활-요양-재가-임종) 질환 특성과 상태에 맞춰 보훈공단 및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브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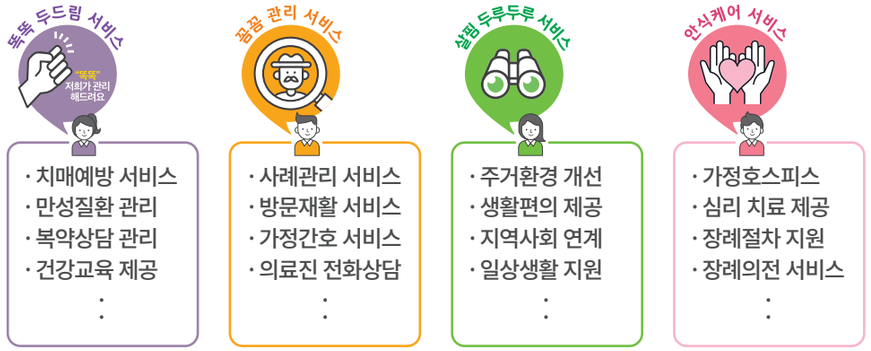

2-1.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종류

분 류	서비스명	내 용
보훈병원 의료·복지 서비스	방문재활 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가정방문
	가정간호서비스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환자 건강관리
	가정호스피스	호스피스 전담팀 방문을 통한 말기 환자 통증 및 증상관리
	치매예방·관리	치매 단계별 검사 및 맞춤 치료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택 수리
지역사회 자원 연결 상담	의료복지상담	· 환자 의료복지상담을 통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관리 ·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연결

2-2. 지역사회 자원 연결 상담

10개 영역 52개 분류 113개 서비스 제공

일자리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직업상담 및 알선 등(6개)	주거환경 개선 등(3개)	가사지원 등 (7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6개)	정신건강교육 등 (6개)
보호 및 돌봄·요양	보육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
단기 시설 보호 등(6개)	평생교육 등 (8개)	문화, 여가 관련 비용지원 등(5개)	안전 및 인권 교육 등(4개)	보훈공단 제공 특화서비스

3.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제공 절차

① 환자상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한 서비스 자격 대상 여부 확인, 환자 질환상태, 건강욕구, 필요 서비스 파악

②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상담 환자 건강복지안전망*(IMSAFE) 등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

수립된 환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보훈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연결

※ 건강복지안전망(IMSAFE)란?

보훈병원 의료사회복지사와의 개별 상담 시 환자의 의료·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복지서비스 자동 추천 시스템

4. 보훈의료복지통합서비스 이용안내

① 병원생활 및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보훈병원 의료사회복지과에서는 병원 이용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상담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병원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및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안내, 연결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보훈병원 환자 및 보호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비용 :** 무료 ※ 단, 서비스 연결 후 각 서비스에 따른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서비스 * 상담 서비스 비밀 보장

- 보훈병원·요양원, 위탁병원, 보훈공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용 안내
- 보훈부,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등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안내
- 서비스 신청방법 및 행정서류 안내

- 환자 상황별

구 분	서비스 연결 사례
심리(정서)적, 사회적 상황	· 개별 상담 및 전문상담소 연결 · 지역 사회복지관 연결 · 국가지원제도(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 등)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제공 서비스(노인장기 요양등급, 중증환자 등록)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경제적 상황	·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등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안내
퇴원 이후 상황	· 보훈병원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 연결 · 위탁병원, 보훈요양병원 연결 · 보훈섬김이, 요양보호사, 바우처도우미 등 재가서비스 연결 · 요양원, 주간·단기보호센터 등 시설 연결
재활 서비스 필요	· 보훈병원 방문 재활치료 서비스 연결 · 장애등록 대상여부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결 · 장애인 재활훈련 등 재활 서비스 연결 · 사회복귀시설 연결
지역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필요	· 가사·간병 서비스 연결 · 장애인 이동지원 연결 · 생활 편의 시설 연결 · 각종 지역 복지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결

- 제공 서비스별

구 분		서비스 연결 사례	연결기관
노인 요양	돌봄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입소자격, 감면지원 등 안내	재가요양시설, 보훈지청
	유공자 복지	보훈부 재가복지서비스 등 연결	
	공동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연결	
	아름다운 마무리	죽음-연명의료 결정 등 안내	
장애 복지	장애인 복지	장애인 지원 혜택 등 안내	지자체, 보조기기센터, 장애인지원센터
	보장구 관리	휠체어, 의족 등 신체보조기기 무상 수리 및 관리	
건강 관리	치매예방	치매 조기검진, 예방관리,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한 건강관리 교육	
	건강상담	노인성 질환 건강검진 및 식생활 상담 등	
여가 복지	여가복지	가사 및 영양지원, 바우처 등 노인여가복지 연결	사회복지관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담당 의사, 의료사회복지과(사회사업(복지)실) 문의
	입원	담당 의사, 병동 간호사 문의

안내 및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의료사회복지과	02-2225-1644
부산보훈병원	사회사업팀	051-601-6843
광주보훈병원	사회사업팀	062-602-6869
대구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53-630-7855
대전보훈병원	사회사업실	042-939-0196(0238)
인천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32-363-9704(9705)

② 병원까지 오시는 데 많이 힘드시죠? (재가의료서비스)

- 물리·작업치료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방문재활 치료)
-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가정간호 서비스)
-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고싶을 때 (가정호스피스)
- 가정에서의 보장구 취형, 제작을 원할 때 (방문보장구 서비스)
- 자꾸 깜빡! 잊어버리시나요? (치매예방관리)

물리·작업치료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방문재활 치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물리·작업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 치료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비용 :** 무료 ※감면, 일반환자 신청 불가

주요 서비스

구 분	내 용
방문 물리치료	· 신체능력평가 · 물리·온열치료, 통증치료 · 보행 및 낙상예방을 위한 자가훈련 방법 교육
방문인지, 작업치료	· 전산화 인지 재활치료, 인지평가 · 도구를 활용한 작업 치료 · 삼킴장애 재활 전기자극 치료 등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재활의학과 진료 시 전문의와 상담
	입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퇴원 상담 시 신청
타 병원 환자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 접수하여 전문의와 상담

안내 및 문의

* 인천보훈병원 서비스 미시행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재활의학과	02-2225-1826
부산보훈병원	재활의학과	051-601-6570
광주보훈병원	재활의학과	062-602-4711
대구보훈병원	재활의학과	053-630-7191(7195, 7196)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042-605-0613

간호사의 가정방문을 원할 때 (가정간호 서비스)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회복과 질병 재발방지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조기퇴원 및 장기재원 환자
- 신경기능 및 근골격계 장애 등 거동 불편 환자
- 만성질환, 뇌혈관질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및 합병증 환자
- 암 간호 대상자
- 위관영양, 기관절개관, 인공항문, 유치도뇨관 등 특수간호를 요하는 환자
- 기타 진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비용

- 국비환자(무료)
- 감면환자(감면율 적용) ※ 예치금 10만원 기 납부
- 일반환자(본인 부담)

※ 의료보험, 암, 중증·희귀난치질환자 감면율 적용

주요 서비스

- 투약지도 및 건강상담, 예방교육 등 질병과 관련된 전반적 관리
- 욕창, 상처, 수술부위의 치료와 관리
- 의사 처방에 의한 약물투여, 주사
- 튜브류 교체 및 관리
- 의료기구·장비 사용법 교육
- 질병 재발방지, 의료문제, 정서안정 등 상담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외래 진료 시 담당 의사와 상담
	입원	퇴원 1~2일 전 담당 의사(또는 병동 간호사)와 상담
타 병원 환자		상세한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지참 후 본원의 해당 진료과 외래 접수하여 담당 의사 상담

안내 및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2-2225-1246
부산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51-601-6173
광주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62-602-6225
대구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53-630-7844(7856)
대전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42-939-0308
인천보훈병원	가정간호사업실	032-363-9738(9739)

가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고싶을 때 (가정호스피스)

말기 환자가 가정에서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전담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 완화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암(또는 비암질환) 말기 환자와 그 가족
· **비용**
- 국비환자(무료)
- 감면환자(감면율 적용)
- 일반환자(본인 부담)

제공 서비스

구 분	내 용	호스피스 전문팀
환자	· 진료 및 처방	전문의
	· 통증 및 증상관리	간호사
	· 욕창 관리	간호사
	· 발 마사지 등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 영적돌봄 및 정서적 지지	종교지도자/자원봉사자
가족	· 환자 돌봄 등 가족교육	사회복지사
	· 사별가족 상담, 조모임	
	· 슬픔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접수 후 담당 의사와 상담
	입원	퇴원 전 담당 의사(또는 병동 간호사)와 상담
타 병원 환자		완화의료환자 확인용 소견서(또는 진단서) 지참 후 본원의 가정의학과(완화의료클리닉) 외래 접수하여 담당 의사 상담

안내 및 문의

* 인천보훈병원 서비스 미시행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02-2225-1561
부산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051-601-6891
광주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062-602-6319
대구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053-630-7343
대전보훈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실	042-939-0326

가정에서의 보장구 취형, 제작을 원할 때 (방문보장구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보조공학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보장구 취형(본뜨기), 장착 등 제작, 훈련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일반환자
· **비용**
  - 국비환자(무료)
  - 감면환자(감면율 적용)
  - 일반환자(본인 부담)

주요 서비스

· 보장구 관련 전화 상담
· 취형(본뜨기), 가장착(장착 전 사전점검)
· 장착 및 사용안내, 수리(불편 수정, 노후부품 교체 등)
· 올바른 보장구 이용을 위한 재활 훈련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외래 간호사에게 신청 또는 보장구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입원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또는 보장구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타 병원 환자		보장구센터 전화 및 방문 신청

안내 및 문의

* 인천보훈병원 서비스 미시행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2-2225-1276
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51-601-6168
광주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62-602-6926
대구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53-630-7678
대전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42-939-0585

자꾸 깜빡! 잊어버리시나요? (치매예방관리)

① 치매검사(인지기능 자가 설문)
② 치매판정(고위험군 선별)
③ 치매치료(전문의 진료 연계)의 단계별 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과 악화 지연을 도와드립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노인성 질환을 가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역주민
· **비용**
- 국비환자(무료)
- 감면환자(감면율 적용)
- 일반환자(본인 부담)

제공 서비스

- 치매 고위험군 선별 검사

구 분	내 용
초기선별	· 기억·인지장애 설문지(KDSQ) 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 선별 ※ 문자 링크 발송을 통한 비대면(모바일) 설문 가능
진료연계	· 치매 고위험군 대상, 보훈병원 전문의 진료 연결 통한 기본검사(CDR, K-MMSE, SNSB 등) 치매 선별
정밀검사 및 치료	· 치매 환자 대상, 치매 원인 및 정도 파악을 위한 MRI, CT, 혈액검사 등 진행 · 치매원인(알츠하이머, 혈관성 등)에 따른 치료계획 수립
치매지원 정보제공	· 치매 환자 및 가족 대상, 의료사회복지사 통한 지역사회 지원정보 제공 및 연계

- 검사 결과별 맞춤 치료

구 분	내 용
정상	· 치매예방 교육 및 주기적 선별검사 안내
경도인지 장애환자	· 약물 치료 및 인지훈련 등 프로그램(비약물 치료) 연결
치매환자	· 치매 원인에 따른 약물 치료 ·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치매 치료 프로그램 연결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본원 환자	외래	의료사회복지과 및 사회사업(복지)실 대면/비대면 기억·인지장애 설문(KDSQ) 자가 체크 또는 해당 진료과* 외래 진료 *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의료사회복지과 및 사회사업(복지)실 입원환자 대상, 치매 프로그램 문의
타 병원 환자		본원의 해당 진료과 외래 접수하여 담당 의사와 상담

안내 및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공공의료사업과	02-2225-3972
부산보훈병원	사회사업팀	051-601-6758
광주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62-602-6448
대구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53-630-7835
대전보훈병원	사회사업실	042-939-0196(0238)
인천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32-363-9704(9705)

③ 노후된 집을 수리하고 싶으신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보훈공단 복지관리부에서는 장애·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주택구조나 생활편의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 든든한 보훈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집의 지붕, 화장실, 샷시, 도배, 장판 등 수리가 필요하시 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지원범위

· 대상

1)생활편의 시설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2)주택구조
- 국가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비용

1)생활편의 시설
- 가구당 10백만원 한도

2)주택구조
- 가구당 30백만원 한도

※ 서비스 기 수혜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금 초과 시 본인 부담

주요 서비스

생활편의 시설	주택구조
(소규모 수리) · 도배, 장판 · 거동 불편 해소를 위한 문턱 제거, 경사면 및 안전손잡이 등 시설물 설치	(대규모 수리) · 생활편의 시설을 포함한 지붕, 화장실, 샷시 등

신청방법

· 모집기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신청기관 : 보훈병원 및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추천

안내 및 문의

* 관할 지방보훈지청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본사	복지관리부	033-749-3757
중앙보훈병원	의료사회복지과	02-2225-1644
부산보훈병원	사회사업팀	051-601-6228
광주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62-602-6485
대구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53-630-7855
대전보훈병원	사회사업실	042-939-0196(0238)
인천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32-363-9704(9705)

이용사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주 택 전 경		
화장실		

❹ 중앙보훈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원하시나요?

보훈병원 진료협력(전원)센터에서는 전국 지방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후, 의뢰된 중증전문질환 환자분들에게 체계적인 전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한 검사와 수술, 입원으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앙보훈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진 상호 초청수술을 실시하며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의료품질을 제공합니다.

대상 / 비용

· **대상 :** 지방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전원 의뢰된 중증전문질환 환자
· **비용 :** 무료 ※ 단, 전원 연결에 한함

주요 서비스

· 중증질환 전원상담
· 타 병원 회송 전원상담 및 상급종합병원 의뢰예약 (의뢰-회송 업무)
· 진료정보교류 ※ 사업 참여병원 간 가능

진료협력(전원) 절차

구 분	내 용
①진단	· 지방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등에서 중증질환 진단
②의뢰	· 지방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 (진료 의뢰서 송부) → 중앙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전원 의뢰
③협의	· 송부된 진료 의뢰서로 해당 진료과 담당 의사와 협의(외래 진료 예약)
④입원	· 외래 진료 후 입원 여부 결정

※ 원거리 환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 시 임시 숙소(보훈의 집) 제공

안내 및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2-2225-1618
부산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51-601-6533
광주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62-602-6488
대구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53-630-7555
대전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42-939-0213
인천보훈병원	진료협력센터	032-363-9735

❺ 맞춤형 보장구(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 제작,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보장구센터는 국가유공자와 일반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52종 보장구를 제작,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연구개발(R&D)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개인별, 맞춤형 보장구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방보훈병원에도 보장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인 보장구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상 / 비용

·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 6.18자유상이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전투종사군무원
- 애국지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특수임무부상자

· **비용** : 상이처 해당 보철구 무상공급

이용절차

1. 보훈지(방)청 지급신청 의뢰
2. 보장구센터 확인 및 접수
3. 보장구 취형
4. 보장구 지급 (장착)

일반 장애인

대상 / 비용

· **대상 :**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비용 :** 건강보험 환자(적용 대상 품목 기준액 범위 90% 지원)
의료급여 환자(적용 대상 품목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이용절차

※ 의료급여(1, 2종) 환자는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고 시, 군, 구에 승인을 받아 구입 후 급여청구

지급 제품

제작품	기성품
· 팔의지, 다리의지 · 팔보조기, 다리보조기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특수보장구(의안, 보청기) 등	· 휠체어 · 중상이자 리프트 · 지팡이류 · 청각언어장애 보장구, 시각장애 보장구 · 기타보장구 등

보장구센터 외래진료

구 분	내 용
진료시간	월, 목요일 오전 10:00~11:00
구비서류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상담전화	02-2225-1266
상담시간	월~금 오전 08:30~17:30
홈페이지	http://pocenter.bohun.or.kr/

※ 보장구센터 외래진료는 중앙보훈병원에 한하며 지방보훈병원은 보장구센터 상담 문의

안내 및 문의

구분	문 의 처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2-2225-4541
부산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51-601-6168
광주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62-602-6926
대구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53-630-7678
대전보훈병원	보장구센터	042-939-0585
인천보훈병원	사회복지실	032-363-9704(9705)

알려드립니다

※ 본 책자는 '23년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본 책자에 표기된 '누리집'은 홈페이지의 우리말 표현입니다.

소득인정액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 고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33만 688	722만 7,981	810만 7,515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30%)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3만 1,157	138만 2,462	177만 3,927	216만 386	253만 2,275	289만 1,193	324만 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47%)	97만 6,609	162만 4,393	208만 4,364	253만 8,453	297만 5,423	339만 7,151	381만 532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03만 8,946	172만 8,077	221만 7,408	270만 482	316만 5,344	361만 3,991	405만 3,758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70만 482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전국가구 평균소득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함

II

보훈대상자 지원서비스

·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이나 공헌을 하셨나요?

①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2. 내용

희생·공헌 정도, 고령, 부양가족 여부 등 대상자별 여건을 고려해 매월 39만 원~684만 6,000원의 보상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1.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2.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구분	금액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112만 7,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1인 가구는 별도 기준금액 적용(119만 1,000원)

2. 내용

생활수준 조사 후 가족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 3인 이하 가족 : 22만 원~28만 3,000원

· 4인 이상 가족 : 27만 3,000원~33만 6,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금액	47만 원	46만 5,000원	46만 원	45만 5,000원	45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저소득가구 지원)

1. 대상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4인 기준 378만 675원)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인 경우

2. 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34만 5,000원~47만 8,000원까지 생활지원금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1. 대상
애국지사

2.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 지급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
	3급	4급	5급	
월 지급금액	232만 5,000원	192만 원	172만 5,000원	157만 5,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1.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3.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2. 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1. 대상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9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53만 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30만 7,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43만 9,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11만 9,000원	82만 5,000원	54만 1,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99만 3,000원	154만 9,000원	12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2012.7.1.이전 등록		2012.7.1.이후 등록	
1급	2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69만 7,000원 ~291만 5,000원	93만 2,000원	291만 5,000원	194만 4,000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1. 대상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2. 내용
매월 40만 1,000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1. 대상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이면서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매월 10만 원의 지원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②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해드립니다.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를 받고 있는 대상

2. 내용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지원, 건강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

※ 복지 환경을 고려하여 주 1~3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유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40만 964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540만 964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구분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80%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40%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60%)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60% (의료급여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사망 시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훈묘원)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1.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2.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진료비 전액 지원(단, 예방진료 및 외모개선 목적 진료 등은 제외)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전문위탁진료)
감면진료	· 본인부담액의 30~90% 감면

3. 방법

보훈병원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보훈병원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1. 대상

· 국비진료 :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 감면진료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자 1인, 6·25자녀수당을 받는 선순위자녀,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부상) 군경의 배우자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국비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 지원[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항목(초음파 검사, MRI, 건위소화제)] ※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상이처(합병증 포함) 국비진료 · 아래 대상자는 부상(질병 포함) 당한 곳 이외의 질환 진료 시 10% 본인부담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유공자(전·공상군경, 재해부상 군경 등)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 경도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감면진료	·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60~90% 감면(비급여 제외) · 감면대상자가 위탁병원 이용 시 약국 약제비 지원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1인당 연간 25만 2,000원 한도) - 75세 이상 무공수훈자(1인당 연간 16만 원 한도) ※ 유족은 약국 약제비 미지원

3. 방법

위탁병원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 예우보상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해당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보훈가족

2. 내용

우울, 불면 등 심리적 아픔을 가진 국가유공자를 치유하기 위해 기초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

3. 방법

서울 여의도 심리재활집중센터, 부산·대전·대구·광주청 및 인천지청 방문 또는 유선 신청

4. 문의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중)

3.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1.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2. 내용

보철용 차량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충전비 지원 : 복지카드로 보철용 친환경차량에 전기 또는 수소 충전 시 월 29,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2022.1.1. 이후 신규 등록한 경우 100만 원 정액 지원(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3. 방법

· 충전비 지원 :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 구매보조금 지원 : 관할 보훈관서에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기타지원 참조

교통시설 이용 지원

1. 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2. 내용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3.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열차·지하철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

· 버스 : 전국 시내(군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대상 구분 및 상이등급이 기재 된 신분확인증 필요)

※ 수도권 및 광역시 시내버스, 지하철은 복지카드 이용 가능(단, 지역 간 호환 안 됨)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통신요금감면

감면 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 감면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 요금제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가구 당 1회선)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1. 대상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수권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수권 배우자, 생활지원금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사망 후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받던 혜택을 승계하여 받는 유족

2.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2.4~3.4%의 저금리 대출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상환기간) 3~20년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2. 내용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 주택임차, 농토구입, 사업자금, 학자금, 생활안정 등을 위한 비용을 연 2.9~3.9% 저금리로 300만~8,000만 원까지 대출(3~20년 상환)

3. 방법
거주지 인근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의 '나라사랑 대출' 창구 이용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관할 보훈관서에 문의

4. 문의
· KB국민은행(☎1599-9999) 및 NH농협은행(☎1588-2100)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취업 수강료	취업을 위한 학원수강료 지원 · 6급 이하 공무원, 교사임용, 공기업 채용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 과정 등 국가보훈부 지정과정으로 본인 부담 수강료의 70% 지원 · 연간 1인당 본인 150만 원, 유가족 75만 원 지원 · 1인당 총 지원한도액 : 본인 300만 원, 유가족 150 만 원
직업훈련 장려금	공공직업훈련기관 입소 대상자에게 매 분기별로 월 4만 원 지급

3.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이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2.7.1.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자녀, 비상이자(무공.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의 자녀
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장해등급 12급 이하 판정자 및 그 밖의 희생자의 자녀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2016.11.30.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 배우자, 자녀	2016.6.23.이후 등록자인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대상 직렬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가점 취업	채용시험 시 본인점수에 만점의 5~10%의 가점 부여

3. 방법

· 국가기관 등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추천의뢰 ⇨ 추천대상자 선정 ⇨ 추천 ⇨ 채용

· 사립학교, 기업체 등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 직종확보 ⇨ 추천 대상자 선정 ⇨ 추천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 통지 ⇨ 취업사실 통보

· 가점 취업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합격자 결정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1. 대상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2. 내용

국가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으로 3회 취업 가능

구분	지원내용
국가기관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8%(국가유공자 등 포함)를 의무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등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국가유공자 등 포함)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비율에 1%를 가산(4~9%)

3. 방법

취업을 희망하는 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문의(☎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1. 대상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중·장기복무(5년 이상~19년 6개월 미만) 제대군인

※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한 사람,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제외

2. 내용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 원씩,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취·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방법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신청

4. 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대표번호 ☎1666-9279, www.vnet.go.kr)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1.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2.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 지원

3.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

4.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❸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중·고등학교에 한함) 면제

· 중·고등학교 : 학교에 면제증명서가 제출된 달부터 면제

· 대학교 등 : 면제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학기부터 면제

3. 방법

· 중·고등학교 :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 대상자 통보

※ 단,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학 또는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 대학교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학교에 제출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1. 대상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 본인·배우자는 대학까지, 자녀·손자녀는 중·고등학교까지 지급

※ 자녀 중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는 대학까지 지급

2. 내용

중·고·대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기관 등의 연간 학습보조비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중학교	12만 4,000원
고등학교	14만 4,000원~18만 6,000원
대학교	23만 6,000원
특수학교	53만 4,000원~71만 8,000원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대상

·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한 제대군인

※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수준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10년 이상 복무 제대군인이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생활수준) 이하인 가구의 고등학교 취학 자녀

2. 내용

제대군인 본인과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지급

· 고교취학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를 받는 경우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함

3. 방법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학기별(4월 15일, 10월 15일)로 지급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1. 대상

· 대학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유공자의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 중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특수학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 특수(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6·25전몰군경 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중인 자

2. 내용

대학원 및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게 학기별 장학금 지급

구분	학습보조비
대학원	학기별 최고 115만 원까지 지급
특수학교	학기별 30만 원 지급
대학	학기별 최고 90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2023년 4월 3일~5월 1일, 2학기 2023년 9월 1일~10월 2일

· 접수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4.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예우보상 ⇨ 지원안내 ⇨ 교육지원 참조

III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1.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이 많으시죠?

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원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월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	월 최대 32만 3,180원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3.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를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알려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근로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어르신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22년) 103만 원 → ('23년) 108만 원

노후준비서비스

1. 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

2. 내용

노후준비를 위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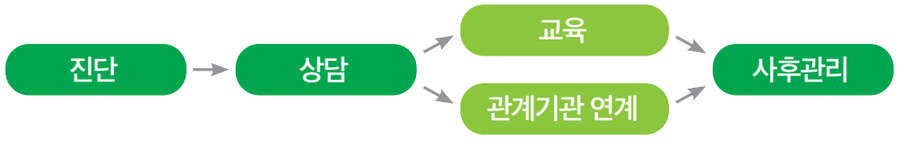

구분	지원내용
진단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표준지표로 구성된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
상담	진단을 통해 파악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역별 실천 과제 및 방법 등에 대한 상담
교육	공단 소속 노후준비 전문 강사들이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 맞춤형 강의
관계기관 연계	타 기관의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계하는 One-Stop 서비스
사후관리	상담시 설정한 과제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희망시 추가 상담 및 정보 제공

3. 방법

국민연금공단 20개 거점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4.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국민연금공단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csa.nps.or.kr)

알려드립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만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었으나, 2022년 6월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은 CSA(노후준비컨설턴트) 등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1. 대상

보유 주택이 공시 가격 등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 어르신

※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 원 이하이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

2. 내용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 수령

지원예시	집값이 3억 원인 55세 가입자는 매월 45만 3,000원, 70세 가입자는 매월 90만 1,000원의 연금수령 (종신지급, 정액형 이용, 부부의 경우 연소자 연령, 2023년 3월 1일 기준)

※ 일정한도 내에서 목돈으로 한 번에 인출해 의료비, 주택수선비, 선순위 대출 상환용도로 사용 가능

3.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채무인수(6개월 이내)하여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연금금액은 감액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Q.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 이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나요?

A. 이사 후에도 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새로운 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주택의 공시가격 등*은 조건변경 승인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이거나 기존 주택 공시가격 등* 보다 낮거나 같아야 합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

Q. 연금으로 받은 금액이 집값보다 적거나 집값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산절차를 통해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해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1.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2.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3.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4. 문의

한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은퇴금융 아카데미

1. 대상

은퇴준비에 필요한 경제금융지식 및 은퇴생활정보 교육이 필요한 사람

2. 내용

자산관리, 은퇴금융상품, 신용·부채관리 등 금융지식과 각종 생활정보 강좌 무료 제공

3. 방법

개최 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수강 지역과 일정을 안내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상시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방법 : 유튜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은퇴금융] 채널

· 교육과정 : 노후준비 전략, 재무설계, 세금특강 등

❷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의 취업을 지원해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사업단	만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 일부 유형 한정하여 만 60세 이상 참여 허용

2. 내용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사회활동	공익활동	· 지역사회 공익 증진 프로그램 참여 (월 30시간 이상, 27만 원 활동수당)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범사업)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시설 활동보조 프로그램 (월 60시간, 월 급여 최대 59만 4,000원(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별도)) - 지역아동센터·장애인거주시설 식사보조, 환경정리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매장·사업단에서 활동 -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등
	취업알선형	·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 경비·청소·가사·간병인 등
	시니어인턴십	· 민간기업 취업지원 - 기업인턴(3개월) 후 계속고용 유도(기업대상 인건비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 노인다수 고용기업 또는 우수 노인고용기업 지원 - 인증형, 창업형

3. 방법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 신청

4. 문의

·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자주 하는 질문

Q.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도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보나요?

A.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활동비는 기초연금대상자 선정 시 근로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❸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가·문화·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1. 대상

어르신

2. 내용

동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내에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문화 향유 지원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이용

4. 문의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1. 대상

전 국민

2. 내용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기초, 생활(모바일, 키오스크 등) 등 ICT 활용 교육 무료 제공

3. 방법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전화((☎1800-0096) 신청

4.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디지털배움터.kr)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1. 대상

60세 이상 국민

2. 내용

지역적 특성에 맞춘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활동(음악,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을 무료로 운영 및 전국단위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3. 방법

문화원, 문화의집 등 가까운 문화시설 이용

※ 매년 문화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해 주변 지역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문의 필요

4.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❹ 치매가 걱정될 때

어르신의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치매검진 지원

1.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어르신(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조기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2. 내용

·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무료 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검사종류	검사내용	지원내용
선별검사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검사(CIST)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실시
진단검사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15만 원 한도 내) 지원
감별검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48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2.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3.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❺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어르신들의 안질환 및 치아 치료, 예방접종 등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노인 안 검진	만 60세 이상 어르신(저소득층 우선)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노인 안 검진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 (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 수술비용 본인부담금 전액 지급 ※ 지원 제외 :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3. 방법

시군구 및 보건소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1. 대상

·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2. 내용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상) 시술 시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5~15%	5%	15%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틀니, 깨끗하고 튼튼하게 사용하는 법

①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 치약은 표면을 쉽게 마모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② 뜨거운 물 소독도 피해야 합니다. 모양이 망가지기 쉽습니다.
③ 부드러운 칫솔모로 살살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④ 하루 8~12시간 착용이 적당합니다. 장시간 착용 시 잇몸이 붓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잠 잘 때는 꼭 빼주세요.
⑤ 공기 중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상온 보관 시 틀니가 건조해서 뒤틀리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전용 세정제에 담가 보관하세요.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1. 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환자(치아가 완전히 없는 경우 제외)

알려드립니다.

Q. 부분 무치악이란?

A.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2. 내용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해당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평생 2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30%	10~20%	10%	20%

3. 방법

· 건강보험대상자 :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 의료급여수급자 : 치과 병·의원 및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등록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Q.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부분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라도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1. 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2. 내용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지원

※ 지원 제외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치료비 등, 간병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지원 결정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3.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www.ok6595.or.kr)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1.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2. 내용

구분	접종내용
폐렴구균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1회 지원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4가 백신(IIV), 매년 1회 지원 ※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정해져 있는 계절사업임(매년 10월경)

3.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지정의료기관 확인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 접종기관 방문 전 접종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자주 하는 질문

Q.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한가요?

A.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은 동시접종이 가능하며, 동시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특별히 지켜야 할 접종간격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예진 후 피접종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접종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❻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도구 : 신체·정신·사회참여 영역의 취약요인을 조사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을 산정

2. 내용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 제공

· 방문형, 통원형(그룹형 프로그램) 등 제공형태 다양화

※ 각 대상자의 돌봄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제공시간, 서비스 내용 등 지원수준이 다름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직접 서비스 (방문 · 통원 등)	안전지원	방문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전화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정서지원)
		ICT 안전지원	- ICT 관리·교육, ICT 안전·안부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여가활동,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분야	- 영양교육, 보건교육, 건강교육
		정신건강분야	- 우울예방·인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이동활동지원	- 외출동행
		가사지원	- 식사관리, 청소관리
연계서비스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 대상자 결정(시군구) ⇨ 서비스제공(수행기관)

※ 특화서비스의 경우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직접 접수도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1. 대상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 그 외 기초지자체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 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제외

2. 내용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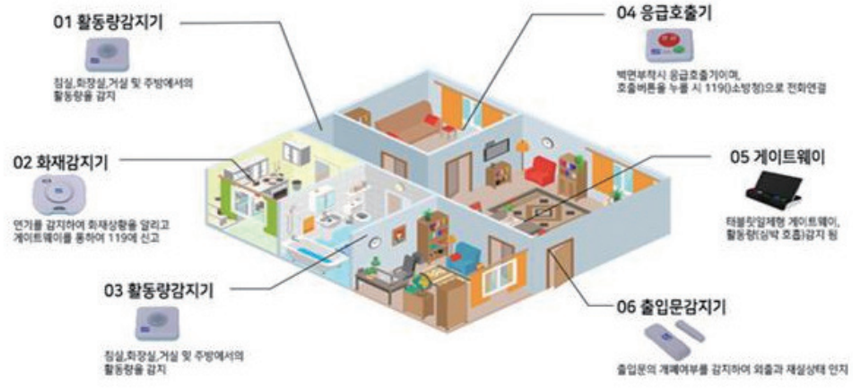

3. 방법

사업대상자 추천 및 대상자 발굴 ⇨ 서비스 신청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승인요청 ⇨ 대상자 승인 ⇨ 댁내장비 설치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결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1. 대상

학대피해 어르신 및 그 가족, 학대행위자

2. 내용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홍보사업
· 전문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 중앙·지역노인 학대 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 노인 인식개선 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이동상담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기념행사

3. 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지원

4.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알려드립니다.

Q. 어르신 학대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어르신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 **방임 :**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어르신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방임 포함)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어르신을 버리는 행위

Q. 어르신 학대 사례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 학대 상황 등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보건복지부콜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앱스토어> <구글플레이>

⑦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교통비에서 공공요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요금감면으로
어르신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교통비	65세 이상 어르신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무료 이용 - KTX·새마을호·무궁화호 30% 감면 (KTX·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 통근열차 5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코레일 ☎1544-7788)
		· 항공요금 감면 - 대한항공 국내선·국제선 10% 감면 (단, 성수기, 일부노선은 제외)	이용 시 신분증 제시 (대한항공 ☎1588-2001)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 여객운임 20% 감면	이용 시 신분증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문화 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입장 ·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이상 할인 ·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입장료 50% 할인	입장 시 신분증 제시
국민 건강 보험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요건 만족 시 최대 30% 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이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경우 30% 경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소득	360만 원 이하		
재산	6,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이하	1억 3,500만 원 이하
경감률	30%	20%	10%

통신 요금	기초 연금 수급자	· 월 청구된 이용금액이 2만 2,000원 (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 감면 ·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만 1,000원 감면	· 기초연금 신청 시 이동전화 요금 감면 동시 신청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이동전화 요금 감면 별도 신청 시 - (방문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신청 - (온라인/전화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로 신청,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신청
각종 공공 요금	노인 복지 시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시설에서 신청 (한국전력공사 ☎123)
		·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환경부 ☎1577-8866)

2.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①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합니다.

기초연금제도

1.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과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요양급여 제공
요양비	· 만성신부전증환자, 당뇨병환자, 신경인성방광환자의 소모성재료의 일부 지급 ·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양압기 등 기기 대여료(소모품)의 일부 지급 · 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다태아 140만 원,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 20만 원 추가 지급)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참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 지급

3. 방법

·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가입자 : 직장 실직,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알려드립니다.

Q. 피부양자란?

A. 직장가입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배우자의 자녀·손자녀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1. 대상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질환을 가진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내용

구분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암	5년	5%
뇌혈관질환	최대 30일(입원)	5%
심장질환	최대 30일 (단, 복잡성 선천성 심기형 및 심장이식 시 60일)	5%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 1년)	10%
중증난치질환	5년	10%
결핵	결핵치료기간	0%
잠복결핵	1년	0%
중증화상	1년	5%
중증외상	최대 30일(입원)	5%
중증치매	V800 : 5년 V810 : 5년(매년 60일 산정특례적용, 연장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 연장)	10%

3. 방법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을 받고, 담당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해당 병·의원 또는 공단에 신청

※ 뇌혈관,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 적용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건강보험 차상위

1. 대상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본인부담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기본식대의 20%만 부담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 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지급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1.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 거주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2. 내용

· 병원진료일 알림서비스 : 병·의원 치료일 및 예약일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육·상담 서비스 : 환자가 가정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 및 영양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 의료비 지원(65세 이상) : 환자의 진료비,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매월 지원
※ 진료비 1,500원, 약제비 질환별 2,000원 지원(고혈압, 당뇨병 모두 진료 받는 경우는 4,000원 지원)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3. 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신청(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 작성)

4.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자주 하는 질문

Q. 병·의원이나 약국은 어디든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병·의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등록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해 꼭 확인하세요.

Q. 병·의원 방문 시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A. 병·의원을 처음 방문할 때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동의서'를 작성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중증질환 산정특례)

1. 대상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자, 결핵질환자

2.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산정특례 등록자(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의 경우 의료급여 절차 예외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3. 방법
· 암, 중증화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성질환, 결핵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및 의료기관을 통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 뇌혈관·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별도 자격전환 및 등록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1.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table>
<tr><th>기준</th><th colspan="2">조건</th></tr>
<tr><td>소득</td><td colspan="2">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9만 4,680원, 지역가입자 15만 4,270원) 이하</td></tr>
<tr><td>재산</td><td colspan="2">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td></tr>
<tr><td>의료비 부담 수준</td><td colspan="2">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table>
<tr><th>소득구간</th><th>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td><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td><td>(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2023년 기준 120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시 지원</td></tr>
<tr><td>기준중위소득 100% 이하</td><td>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td></tr>
</table>
※ 상기 기준은 진료개시일이 2023.1.1.이후 대상자부터 적용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금액 - 지원제외항목금액
※ 지원제외항목 : 미용·성형, 특실 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 치료법,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타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지원금 등</td></tr>
</table>

2. 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용</th></tr>
<tr><td>지원비율</td><td>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table>
<tr><th>소득구간</th><th>지원비율</th></tr>
<tr><td>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td><td>80%</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이하</td><td>70%</td></tr>
<tr><td>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td><td>60%</td></tr>
<tr><td>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td><td>50%</td></tr>
</table></td></tr>
<tr><td>지원한도</td><td>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td></tr>
<tr><td>개별심사</td><td>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td></tr>
</table>

3.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❸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요양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1. 대상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한 의료급여수급자

2. 내용

초과 금액의 일부 환급

<table>
<tr><th>구분</th><th>본인부담금 보상제</th><th>본인부담금 상한제</th><th>대지급금 지원</th></tr>
<tr><td rowspan="2">1종
수급자</td><td>매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td><td>매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 전액 환급</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td></tr>
<tr><td rowspan="3">2종
수급자</td><td rowspan="2">매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50% 지급</td><td>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 원 초과 금액)</td><td rowspan="3">입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시
보장기관이
인정한 금액</td></tr>
<tr><td colspan="2">(노인틀니, 임플란트, 선별급여, 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 적용금액, 비급여, 식대 본인부담금 제외)</td></tr>
</table>

3.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유선, 우편, FAX 등)

4. 문의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2. 내용

구분	지원대상
1종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3.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구분	대상자
1종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당연 적용(사유 발생 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 행려환자, 등록 결핵 환자·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금	제왕절개·자연분만 산모, 6세 미만 아동, 기타 중증질환자(일정기한 내),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치료(외래 포함)

2. 내용

해당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3.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1.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자(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

2. 내용

· 매월 6,000원(7만 2,000원/연)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차감 후 잔액을 정산하여 차기년도 현금으로 환급

※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경우는 해당기간 분을 제외하여 환급

3. 방법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에서 차감되며, 매 연도말 기준 잔액이 있는 경우 다음연도 중 본인계좌로 지급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1.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2.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Q.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입한 경우

②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업무정지·폐업한 경우

③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 1회에 한함)

④ 질병의 조기발견을 원할 때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가건강검진제도

1. 대상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r>
<tr><td>일반
건강검진</td><td>·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자 :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66세 이상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 시행)</td></tr>
<tr><td>암검진</td><td>· 위암 : 40세 이상의 남녀(2년 1회)
· 간암 : 40세 이상의 남녀 중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6개월 1회)
*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대장암 : 50세 이상의 남녀(1년 1회)
· 유방암 : 4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의 여성(2년 1회)
· 폐암 : 54세~74세 남녀 중 고위험군* 해당자(2년 1회)
*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 포함</td></tr>
<tr><td>영유아
건강검진</td><td>·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월령별로 총 8회(구강검진 4회) 검진 실시
<table>
<tr><th>구분</th><th>(1차)
생후
14~35일</th><th>(2차)
4~6
개월</th><th>(3차)
9~12
개월</th><th>(4차)
18~24
개월</th><th>(5차)
30~36
개월</th><th>(6차)
42~48
개월</th><th>(7차)
54~60
개월</th><th>(8차)
66~71
개월</th></tr>
<tr><td>건강
검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구강
검진</td><td>-</td><td>-</td><td>-</td><td>○
(18~29)</td><td>○
(30~41)</td><td>○
(42~53)</td><td>○
(54~65)</td><td>-</td></tr>
</table></td></tr>
</table>

학생 건강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 주기(초등학교 1·4학년생, 중학교 1학년생, 고등학교 1학년생)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3년 주기)

2. 내용

<table>
<tr><th>구분</th><th>목표질환</th></tr>
<tr><td>일반 건강검진</td><td>· 공통 :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폐결핵, 신장질환, 빈혈, 당뇨병 등
· 성·연령별 :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인지기능장애 등
<table>
<tr><th>성·연령별 검사항목</th><th>실시시기</th></tr>
<tr><td>총콜레스테롤</td><td rowspan="4">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td></tr>
<tr><td>HDL콜레스테롤</td></tr>
<tr><td>트리글리세라이드</td></tr>
<tr><td>LDL콜레스테롤</td></tr>
<tr><td>B형간염</td><td>40세</td></tr>
<tr><td>골밀도검사</td><td>54, 66세(여성)</td></tr>
<tr><td>인지기능장애</td><td>66세 이상 2년 1회</td></tr>
<tr><td>정신건강검사(우울증)</td><td>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td></tr>
<tr><td>생활습관평가</td><td>40, 50, 60, 70세</td></tr>
<tr><td>노인신체기능</td><td>66, 70, 80세</td></tr>
<tr><td>치면세균막검사</td><td>40세</td></tr>
</table></td></tr>
</table>

암검진	· 위암 : 위내시경검사(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간암 :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병행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단, 대장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 유방암 : 유방촬영술 ·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발달이상, 비만, 시각·청각이상, 모유수유, 영양결핍(과잉), 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대소변가리기, 개인위생, 사회성 발달, 취학전준비, 전자미디어노출, 치아발육상태, 치아우식증
학생 건강검진 (교육부)	근·골격 및 척추, 시력측정, 안질환, 청력, 구강상태 등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비만, 시각·청각이상, 고혈압, 신장질환, 간질환(B형·C형간염), 성매개질환 등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실시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각 지역 특성 및 주민의 건강수요에 따라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수행
- · 음주폐해예방(절주)
- · 신체활동
- · 영양
- · 비만 예방관리
- · 구강보건
-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 · 한의약 건강증진
- ·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 · 여성어린이특화
- · 지역사회중심 재활
- · 금연
- · 방문 건강관리
- · 치매관리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

4. 문의
-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❺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18세 이상 전체 원발성 암환자

2. 내용
암환자에게 연속 최대 3년 간 의료비 지원(연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 · 관할 보건소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2. 내용
-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1. 대상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당해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인 환자가구(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 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2023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만 3,368	103만 6,846	133만 445	162만 289	189만 9,206	216만 8,394	243만 2,25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만 3,861원 증가(8인 가구 269만 6,116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입원·격리치료 환자) ⇨ 의뢰환자 가구 소득조사, 지원대상 확정(보건소)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보건소)

4. 문의

· 주소지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Q. 입원명령이란?

A. 주소지 보건소에서 전염성 다제내성결핵 환자 등을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후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❻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울증, 중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상담, 교육, 의료비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심층사정평가, 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3. 방법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자주 하는 질문

Q.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는 어떤 일을 하나요?

A.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 대상

· 지역사회 내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내용

· 중독 조기발견 및 단기개입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 후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 중독자 개인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서비스 외에도 가족 단위의 통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이용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1. 대상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는 노숙인 및 취약계층

2. 내용

· 중독자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대상자 증상, 동기수준에 맞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노숙인 관련 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등 지역사회 내 중독관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3. 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살예방센터 운영

1. 대상
지역 주민

2. 내용
· 자살위험자 대상으로 자살 위기상담 서비스 제공 및 정신과적 치료연계
· 만성적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경우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 의뢰 및 연계협력
· 자살유족 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3. 방법
해당 지역 자살예방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2. 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기)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 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요양비 월 22만 3,000원 지급

3.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23.4.1. 이후에는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 부터 신청 가능)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1.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감경적용기준(건강보험료 순위 0~50% 이하 등)에 해당하는 사람

2. 내용

본인이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40% 또는 60% 감경

3. 방법

매월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나 감경 해지자 중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 기준에 해당 시 신청 필요

4.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www.longtermcare.or.kr)

알려드립니다.

Q. 가족 수발자를 위한 '가족상담지원서비스' 제공

A. 가족 수발자의 스트레스, 우울, 부양부담감 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65개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족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227개 전체 운영센터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장기요양재가 수급자 가족 중 상담을 희망하는 가족으로 부양스트레스가 높은 가족 우선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V

만성질환 예방관리

· 따라하기만 하면 건강이 절로 따라오는 만성질환 완전정복!
보훈병원 전문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만성질환 Q&A

내 손 안 똑똑! 만성질환 예방관리

1 당뇨 완전정복 -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중앙보훈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당뇨의 진단

A. 당뇨는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합니다. 8시간 이상 금식 후,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무작위로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 하였을 때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Q. 경구 당부하 검사는 무엇인가요?

A. 75g의 포도당을 섭취하였을 때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Q. 증상을 통해 당뇨를 알 수 있나요?

A. 당뇨에는 3다 증상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은 다뇨 현상으로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몸 안에서 수분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그 소변량이 굉장히 많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다음입니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몸 안에 심하게 갈증이 일어나게 되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증상은 다식입니다. 자꾸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게 되지만 오히려 체중은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지 않은 초기에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 대부분 없으니 45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당뇨는 유전인가요?

A. 당뇨는 유전병은 아니지만 유전과 관련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 부모가 모두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을 갖게 될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또한, 부모 중에 1명이 당뇨병이면 자녀가 당뇨병일 확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같은 부모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더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물 등이 대표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Q. 당뇨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알려주세요!

A. 흰쌀밥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당 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금방 올려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드신다고 해서 빵 대신 떡 드시고 설탕 대신 꿀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밥, 빵, 떡 이런 모든 것들이 단순당이 많아 혈당을 가파르고 빨리 상승시키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는 탄수화물,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가족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술이나 담배도 아주 안 좋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30분 이상 수영, 자전거, 근력운동 등을 계속하시는 것이 꾸준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가 진단된 초기에는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당뇨는 꾸준한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으로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과음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 환자의 절반 정도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을 가지고 있어 혈중의 혈압이나 혈당, 지질 등을 잘 관리하셔야만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효과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혈압 완전정복 -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중앙보훈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고혈압과 저혈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래는 예전부터 고혈압이 140에 90을 기준으로 삼다가 한 3년 전, 미국에서 갑자기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에 80으로 바꾸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후, 뉴스에 온통 난리가 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죠. 논란이 워낙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다음 해에 우리는 140에 90으로 진단 기준을 다시 기존처럼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Q. "140에 90" 이 2개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A. 우리가 혈압을 따질 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2개를 따집니다.
140 수축기 혈압이 높은 숫자고, 그다음에 90 낮은 숫자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사실은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자주 재면 숫자가 매일 일정하지 않고 바뀌어요! 병원에서만 재야 정확한가요?

A. 병원에서 잰 혈압과 집에서 잰 혈압이 굉장히 다르거나 또는 혈압이 매일 요동을 치거나 최근에 혈압약을 바꿔서 혹시라도 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이 걱정되신다면 꼭 집에서 혈압을 추가적으로 재주셔야겠습니다.

Q. 좋은 혈압계는 어떤 것 인가요? 꼭 비싼 혈압계를 써야하나요?

A. 가격에 따라서 기능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정확도 부분은 대부분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팔뚝에서 재는 혈압계를 사용하시라는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팔뚝에 감는 커프의 두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커프에는 크기가 몇 m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커프는 m 사이즈이기 때문에 m사이즈의 범위 안에 팔뚝이 감겨야 되는 커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커프를 팔뚝에 감았다고 했을 때 이 범위 안에 팔뚝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팔뚝이 너무 두꺼워서 이 범위 안에 팔뚝이 들어가지 못하면 혈압이 부정확해지는 겁니다.

Q. 혈압은 언제 몇 번 씩 측정해야 하나요?

A. 혈압은 하루종일 요동칩니다. 운동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부분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담배를 피운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이후에 측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하루 중에 보통 제일 혈압이 높은 시기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혈압을 재는 거를 우선적으로 권고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재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기 전에 한 번 더 측정해서 하루에 두 번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Q.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게 맞나요?

A. 1/3 정도의 환자분들이 내가 고혈압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은 그렇고요. 증상이 있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린다든지 아니면 한 12시간을 푹 잤는데 그다음 날도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다든지 아니면 자려고 누웠는데 베개에서 머리 맥박 소리가 쿵쿵 들린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잠을 못 이룬다든지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우연찮게 고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고혈압은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A.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약은 감기처럼 며칠 먹고 몇 달 먹어서 혈압이 정상이 되면 "치료가 끝났어" 하고 끊을 수 있는 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평생 가는 거냐가 결국은 포인트가 되는데, 유전이 됐든 내 습관이 잘못됐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서건 혈압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생긴 상황에서 고혈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시작한 약을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교정하셔서 혈압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았는데 그것이 정상 범위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시면 안됩니다. 병원에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판단한 의사의 결정을 따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Q. 고혈압 관리를 위한 올바른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알려주세요!

A. 혈압약을 실제로 드시고 있다고 한다면 약을 드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외의 노력을 함으로써 약의 개수도 줄일 수 있고 그러면 약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도 줄겠죠.

만약 내가 체중이 과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겁니다. 체중이 1kg 빠지면 혈압이 1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 100kg 정도 분들이 혈압약을 하나 먹다가 80kg만 돼도 아예 고혈압약을 끊어버리는 분도 있으십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약을 먹다가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담배를 끊으면 예를 들어 혈압이 5 정도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육식 위주의 식단을 하시다가 채식 의주로 바꾸면 한 5 정도 떨어진다. 그다음에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면 또 한 5 정도 떨어진다. 이 정도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습관 조언

일단은 먹는 것부터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떡복이, 라면, 김치, 된장찌개, 젓갈 같이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이 짜고 매운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 혈압에 좋을 수가 없는 음식들입니다. 이 짠 음식들이 소금기 즉, 나트륨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몸에 들어가면 몸에 물을 가둡니다. 배설이 돼야 되는데 몸에 물이 들어가다 보면 그 물들이 다 혈관 안에 있게 되어 당연히 혈관의 압력도 오르게 됩니다.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짠 음식들을 자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트륨 말고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혹시 없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칼륨이라고 해서 나트륨을 몸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성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버섯 등인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칼륨은 콩팥의 기능이 나빠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몸에 쌓이는 성분입니다. 때문에 콩팥 기능이 정상이고 내 몸에 칼륨이 괜찮다는 확인이 된 이후에 이 음식들을 조금씩 남들보다 고려해서 먹어주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고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조언

커피, 담배, 술 모두 끊었는데 괜찮지 않냐 자주는 안먹는데 괜찮지 않냐 적게 먹는데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 조심은 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끊으세요. 조금 피워. 전에 한 개 피우다가 이젠 서너 가지밖에 안 피워요. 하는 것은 금연하는데 오히려 오히려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술은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게 넘어가면 결국 혈압약의 약발이 안 닿게 만듭니다. 또한, 커피는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좀 오르고요. 그다음에 맥박도 좀 빨라집니다만 카페인 성분이 빠지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기초 혈압을 올리는 성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Q. 고혈압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나요?

A. 그럼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건강한 분이어도 임신 중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을 하면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갑상선이 몸을 활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 그 기능이 좀 과해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병이 좋아지면 떨어지겠죠. 다른 경우로는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수면 무호흡증까지 되신 분들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분들도 이 병이 치료가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꼭 병이 있지 않더라도 피부과나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 그리고 허리가 아파 소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약도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하지만 약이 중단되면 그때는 다시 떨어집니다.

Q. 고혈압의 합병증은 무엇이있나요?

A.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심장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그리고 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돼 심장에 있는 근육들이 힘들어하면 심부전, 심지어 팔다리 혈관에 피가 안 가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분들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투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합병증들이 1~3년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관리가 안 돼서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면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물론 그때 가서도 치료를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고혈압의 관리인 겁니다.

◆ 마무리하며...

고혈압은 기본적으로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성질환의 특징은 병원에 자주 안 옵니다. 약을 타러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옵니다. 이 얘기는 고혈압은 내가 관리하는 병인 겁니다. 혈압을 집에서 잘 재고 식습관을 교정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 오기 전 측정한 혈압을 의사 선생님께 잘 보여드리는 것 그러면 많은 시간 진료보는 것 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와 도움되는 처방을 환자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❸ 치매 완전정복 - 신경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중앙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가끔씩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머 내 핸드폰 어디있어? 잃어버렸나? 리모콘은 어디에 있지? 냉장고에 넣어놨던게 엊그제 같은데 또?' 이런 경우도 치매와 연관이 있나요?

A. 말씀해 주신 증상이 모두 다 치매로 연결되는 증상은 아니고요. 주로 건망증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건망증은 사소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기억을 하거든요. 냉장고 사인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어요.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이나 리모컨을 넣어 놓는 증상을 냉장고 사인이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증상으로 느끼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지만 환자분들을 모아서 검사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았는데 실제로는 우울증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Q. 우울증이 생기면 바로 치매가 오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 우울증이 치매에 굉장히 위험인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한 2~3배 가량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치매에는 우울 증상이 쉽게 동반돼서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생긴 치매 증상들을 모아서 가성 치매라고 하고요. 가성 치매는 일반적인 치매랑 임상적으로 봤을 때 증상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가성치매라고 치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매랑은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도 반드시 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Q. 치매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언어 기능이나 단기 기억력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 뇌 기능인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는 모든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명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퇴행성 뇌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이고 이를 뒤따라오는 것들이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 치매 그리고 전측두엽 치매 등이 있습니다.

Q. 치매는 흔한 증상인가요?

A. 중앙치매센터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남으로써 2050년에는 60세 이상 노인의 6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Q.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인가요?

A. 이미 떨어져 있는 인지 기능을 올려드리거나 완전히 치매를 치료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방해 드리는 약물은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드리고 일부 같이 따라오는 증상들을 완화해 드리는게 치료 목표입니다.

Q. 치매인 것은 언제, 어떤 증상으로 알 수 있나요?

A. 치매는 인지 기능을 다시 끌어올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평소에 잘 가던 길이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자주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권역 내 있는 치매 안심센터나 보훈병원이나 혹은 가까운 데 있는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내가 했던 실수, 걱정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조기에 검사하셔서 초반부터 치료를 시작하시면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뇌 MRI뿐만 아니라 신경심리 검사나 아주 초기에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영상 검사 같은 것들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미리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Q. 치매는 유전인가요?

A. 확률적으로는 유전 성향이 있으시다면 유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 가족이나 윗세대에서 치매를 앓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면 조금 더 본인 증상에 대해 관찰하고 미리 검사하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Q. 생활습관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나요?

A. 예방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담배, 술 등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입니다.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데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미리 검진 받고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은 제가 외래에서 봐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운동이 드시는 약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르신 분들은 은퇴하시고 나면 거의 집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집에서만 계시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나가셔서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각종 보조식품이나 음식이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A. 치매에 도움되는 음식이나 보조식품은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소개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그 효과가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제대로 입증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의학적으로 혹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면 제가 병원에서부터 처방해 드리지 않았을까요? 건강보조식품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권고해 드리지 않습니다.

Q. 우리 부모님이 치매인지 아닌지 통화하면서 체크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A. 일단 기본 생활을 잘하고 계신지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는 것들, 식사 잘 챙겨 드시는지, 외출 후에 집에 잘 들어오시는지, 잘 씻으시는지, 밤에 잘 주무시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서 초기 치매 증상이나 징후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분이 우울해 보이거나 심심해하시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있으신지 잘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찾아뵙고 풀어드리는 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마무리하며...

치매는 많은 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질환입니다. 심지어 저도 정말 많이 두렵거든요.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 오셔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검사를 통해서 좋게 나오시면 정말 걱정 없이 즐겁게 지내시면 됩니다.

④ 전립선비대증 - 비뇨의학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중앙보훈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전립선은 무엇인가요?

A. 전립선은 방광 아래 요도에 붙어 있는 장기이고 남성에게만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은 생식 기능인데 처음 만들어지는 정자는 기능적으로 미숙하고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이후, 전립선 액과 만나서 운동성도 부여받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전립선 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연, 구연산 같은 물질들이 살균 작용을 해 밖에서 올라오는 감염들을 차단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요로 감염이 더 낮습니다.

Q.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중요한 원인은 남성 호르몬과 노화입니다. 전립선은 태어났을 때 완두콩만한 아주 작은 크기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커집니다. 정상적인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남성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커지는 건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함으로써 소변 나가는 길을 막게 되고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Q. 전립선 비대증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 것 같은데 꼭 치료를 해야하나요?

A. 많은 환자분이 전립선 비대증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일시적으로 또는 평생 소변줄을 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광 결석이나 요로감염 심지어는 심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립선이 비대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기능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굳이 치료를 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면 주저없이 병원에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나오는 길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한참 망설여도 잘 안 나오는 증상이 있다든지 소변 줄기가 가늘고 끊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잔뇨감, 소변을 아주 자주 본다거나 급박하게 보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밤에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Q. 전립선 비대증은 왜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나요? 금방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인가요?

A.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검사 받아야 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 직후에는 약물을 끊어 볼 수 있지만 결국 나이가 들면서 또 전립선이 자라기 때문에 계속 경과를 보셔야 합니다.

또한, 소변이 마려워 배가 불러오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증상을 요폐, 요저류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거나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혹은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방광 결석이 생긴다든지 신장 기능이 나빠진다든지 하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Q.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A. 수술은 기본적으로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내시경 끝에 전기 칼을 달아서 전립선이 막혀 있는 곳으로 가서 전립선을 깎아줍니다. 방광과 요도 사이를 뻥 뚫어주는 수술을 하는 것인데 레이저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개복을 해서 수술하기도 합니다.

Q.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될 수도 있나요?

A.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서로 무관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커진다고 해도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증상이 서로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고 또, 두 가지 질병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50세 이상 남성은 매년 피검사를 통한 전립선 암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전립선 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A. 안타깝게도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없습니다. 전립선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한참 진행이 된 경우인데 전립선암이 커지면서 방광이나 요도를 누르는 증상은 사실 전립선 비대증과도 거의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이것으로는 감별하기가 어렵고 전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뼈 전이가 흔한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변 오래 참기가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A.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발상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변을 많이 참으면 배뇨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방광 환자분께는 일부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환자분들이 기능적으로 이상이 없을 때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15 ~ 30분 정도 소변을 참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걸 권장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Q.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전립선 비대증의 어떤 증상 호전의 근간은 사실 약물 치료이긴 한데 만약에 약물 치료가 아닌 방법으로 조금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저는 좌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Q. 전립선 비대증에는 어떤 치료가 가장 좋은가요?

A. 환자분들 마다 증상, 검사 결과, 치료에 대한 효과도 서로 다르고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찾아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개인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 두통 완전정복 - 신경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광주보훈병원 신경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두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A. 뇌 자체는 직접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머리 부위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두개골 밖에 있는 혈관, 피부, 근육, 골막이 있고요. 얼굴 주변 부위로는 눈, 코, 귀, 부비동이 있습니다. 두개골 내쪽에서는 혈관, 뇌경막 그리고 뇌신경 상부 경추 부위에 있는 신경 쪽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눌리거나 당겨지거나 변형되거나 또는, 혈관이 늘어나서 확장되거나 염증성 질환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종양이나 뇌출혈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크기가 작을 때는 두통이 전혀 없을 수 있고요. 당연히 크기가 커지면 두통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심각한 질환 이외에도 고혈압과 같은 혈관 질환, 발열을 동반하여 혈관이 확장되면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Q. 두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CT나 MRI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원인 질환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를 1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편두통, 긴장성 두통, 군발성 두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Q. 1차성 두통이 있으면 2차성 두통도 있나요?

A. 1차성 두통하고는 다르게 검사를 통해서 원인 질환이 밝혀지는 경우를 2차성 두통이라고 합니다. 뇌의 기질적인 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염증성 질환에 의한 경우, 알코올 및 약물에 의해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차성 두통과 2차 두통은 진단, 치료, 예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잘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긴장성 투통이란 무엇인가요?

A. 긴장성 두통은 1차성 두통 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대개는 늦은 오후나 밤에 잘 생기고 자주 재발이 되기도 하고 심할 때는 매일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볼 때는 주로 머리가 무겁다든지 멍하다든지 아니면 머리 둘레를 단단한 밴드가 꽉 조이고 있는 듯한 통증 호소를 하시는데 대개 통증의 강도는 심하지는 않습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 과로, 피로, 수면 장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을 때도 두통이 생길 수있습니다.

Q. 긴장성 투통은 어떻게 극복하나요?

A. 1차적으로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는 근이완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Q. 편투통이란 무엇인가요?

A. 많은 환자분이 머리 한쪽이 아프면 편두통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지만 편두통은 머리가 한쪽이 아프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대 이후에 머리 전체가 쿵쿵 울리듯이 아프고 속이 매스껍다거나 이런 위장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안구통이라든지 뒷목이 잡아당기는 듯한 통증 또는 불빛, 냄새, 소리 같은 데도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많은 장애를 끼치는 질환입니다.

이런 편두통이 1년에 서너 번 생긴다고 하면 대증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서너 번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Q. 1차성 두통의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A. 크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면, 식사, 운동을 잘 챙기셔야 하고 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알코올,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물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진통제를 과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Q. 2차성 두통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의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겼을 때는 2차성 두통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일, 수주에 걸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라든지 약물을 복용 해도 두통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운동이나 기침 또는 용변을 보는 복압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 50세 이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을 때, 발열을 동반하는 두통, 의식이 혼미해진다거나 자려고 할 때 아니면 임신 중이라든가 암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생겼을 때는 위험 신호로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Q. 병원 현장에서 보시면 2차성 두통인 경우가 더 많나요?

A. 다행히 대부분의 두통이 1차성 두통입니다. MRI를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한 환자들 중에서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들에게 MRI를 시행해 보았더니 86.4%에서는 정상 소견이었고요 심각한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 정도였습니다.

Q. 구토를 동반한 두통은 무조건 위험한가요?

A.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심, 구토는 편두통의 주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상의 두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반복적으로 생긴 두통을 가진 환자가 오심이나 구토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대부분 편두통 증상이 하나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Q. 가벼운 두통인 경우 약은 끝까지 참고 안 먹는게 좋은가요?

A. 제 생각에는 애써 통증을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약물을 복용 해서 통증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만성 두통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만성 두통시기에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 과용두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으로 인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어떤 두통인지 정확히 진단받은 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Q. 남성보다 여성이 두통을 더 많이 겪나요?

A. 두통 발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사춘기 전후로 남녀 성별간 유병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사춘기 이후가 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3~5배가량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여성 호르몬과 편두통이 밀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 변화가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 여성 호르몬이 줄면 두통도 줄어드나요?

A.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편두통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분들이 내 두통이 언제쯤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대개는 폐경 이후로 한 3~4년 정도 기다리시면 두통이 많이 사라집니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Q. 원인 모르는 두통이 지속되면 심각하다 생각해도 되나요?

A. 만성 두통은 대부분 1차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한 6개월 이상 일정한 양상의 두통이 지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주고 이러한 양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부분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 마무리하며...

일생을 살면서 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통으로 생기는 일상생활의 장애 측면에서 살펴보면 두통은 2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환입니다. 흔하지만 부담을 주는 질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장애를 받을 만큼의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진료를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6 노인성 백내장 - 안과 전문의가 다 알려준다

광주보훈병원 안과 전문의
* 오른쪽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동영상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Q. 노인성 백내장이란 무엇인가요?

A. 우리 눈에는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정체에 혼탁이 와서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 백내장입니다. 60대 이상은 절반 이상 그리고 70대 이상은 대부분이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Q. 노인성 백내장의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눈이 많이 부시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이 생깁니다.

Q. 노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노안은 수정체 조절력이 떨어지는 질환이고요. 조절력이 떨어져서 근거리가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에 혼탁이 온 것이기 때문에 근거리, 원거리 다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Q. 노인성 백내장의 발병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흡연, 음주 같은 생활습관의 문제, 자외선 장기간 노출 등의 경우에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노인성 백내장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A. 안과에 오시면 동공을 확대 시켜 세극등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산동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정체 혼탁 정도와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Q. 노인성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A. 약물 치료도 있지만 효과가 작은 편이고, 근본적이고 주된 치료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Q. 수술은 어느 시기에 하는게 좋을까요?

A. 대개 시력 0.5 기준으로 그 이하가 되면 수술을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시력이 괜찮거나 백내장이 심하지가 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미뤄볼 수 있습니다.

Q. 수술 시 두 눈을 같이 하나요 아니면 따로 하나요?

A. 감염의 우려 때문에 같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개 한쪽을 수술하고 괜찮은지 확인한 다음에 반대쪽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쪽을 하는 경우에는 대개 백내장은 국소 마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협조가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마취 후 양안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수술 후 부작용이 있나요?

A. 수술 후 부작용 중 가장 흔한 것들은 안구 건조와 날파리증입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호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안내염이라고 하는 중증 감염인데 실명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천 명당 1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안약을 잘 넣어주시고 손으로 비비는 것들을 잘 피해주셔야 합니다.

Q. 수술 후 재발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A. 백내장 수정체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재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에 혼탁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수술은 하지 않고 레이저로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Q. 노인성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노안까지 같이 좋아질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정체를 제거하게 되면 노안 교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단초점 수정체 수술의 경우에는 노안 교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안 교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다초점 인공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Q. 라식이나 라색 수술을 해도 나중에 백내장이 오나요?

A. 그렇습니다. 라식이나 라색은 각막에 수술하신 것이고 백내장은 수정체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백내장은 올 수 있습니다.

Q. 라식이나 라색 수술 후,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수정체 질환인 백내장 수술은 각막 질환과 상관없이 수술 할 수 있습니다.

Q. 수술 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내염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안약을 꼭 점안 잘 해주셔야 하고요. 눈을 비비거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운동이라든가 충격, 음주, 흡연 같은 것들을 약 한 달 정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노인성 백내장 예방법을 알려주세요!

A. 백내장의 원인 중의 하나가 노화에 의한 항산화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를 막아주는 여러 야채나 과일들이 있는데 파프리카, 아로니아, 레몬 같은 것들을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 등도 백내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금연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선글라스를 쓰셔서 햇빛을 막고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백내장 수술을 응급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룰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무섭다고 귀찮다고 미루다 보면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행한 백내장을 수술한 경우에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력의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자주 안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V

부록

·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 가요?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고 싶은 가요?

구분	사업명	문의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 LH마이홈(☎1600-1004),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교육급여 : 바우처 상담센터(☎1599-200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등
생활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희망드림 지원	가족센터(☎1577-9337)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구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행복주택 공급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전세임대콜센터(☎1670-0002), 지방도시공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긴급 주거지원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맞춤형급여)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구분	사업명	문의처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슬레이트 처리 지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후 영구 임대주택 리모델링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1855-3020)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지자체(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 한국에너지재단 사회공헌팀(☎02-6913-2132)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182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버팀목 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주거안정 월세대출 (순수 월세 대출 시)	주택도시기금(☎1566-9009)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쌀 할인판매 (양곡할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카드 발급/사용 관련 일반문의) NH농협카드 고객센터 (☎1644-4000, 수령등록, 잔액확인, 분실신고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산림복지 서비스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1544-3228)
	평생교육바우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 콜센터(☎1600-3005)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생활안정 지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민내일배움카드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구분	사업명	문의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자활근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자립자금이 필요할 때	희망저축계좌(Ⅰ, 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로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자녀장려금	국세상담센터(☎126)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원할 때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내선번호 3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소관부서 또는 수행기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 산정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건강보험 차상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41)

구분	사업명	문의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산정특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재난적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대지급금 지원	시군구청
	의료급여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질병의 조기 발견을 원할 때	국가건강검진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바우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주소지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분	사업명	문의처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1577-019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숙인 및 취약계층 알코올 중독문제 관리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1577-1000)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기초연금제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노후준비서비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택연금제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은퇴금융 아카데미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상담안내(☎1544-3388)
사회참여나 문화활동이 필요할 때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용	거주지 인근 복지관 및 경로당
	디지털배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1800-0096)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진흥팀(☎02-704-4332, 2379)

구분	사업명	문의처
치매가 걱정될 때	치매검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어르신의 건강이 걱정될 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노인 틀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98~8399)
어르신을 돌봐 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수사기관(☎112)
어르신을 위한 각종 요금감면 혜택이 궁금할 때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코레일(☎1544-7788) 등
장애로 인해 생활이 곤란할 때	장애인 등록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분	사업명	문의처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해당 주소지 시군구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담당 부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 근로지원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장애인 창업육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구분	사업명	문의처
장애인이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장애인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기센터(☎1670-5529)
	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재활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전국 17개소
	장애친화 건강검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00, 중도시각장애인재활),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척수장애인재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02-880-0500, 음악재활),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보조견)

구분	사업명	문의처
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장애인 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LH마이홈(☎1600-100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무료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사업 (시각·청각장애인용 TV보급)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1577-09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2~6)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을 받고 싶을 때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044-205-3860)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상담센터(☎126)
	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세상담센터(☎126)
지역사회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복지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체육시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각 시도(시군구)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한국농아인협회(☎02-461-2261)
각종 요금을 감면받고 싶을 때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 코레일(☎1544-7788) 등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사망 일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무공영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저소득가구 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구분	사업명	문의처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 일 때 (보훈급여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영주귀국정착금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위로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참전명예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4·19혁명공로수당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계지원금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 일 때 (생활안정 지원)	재가복지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 급여 이용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육지원	보훈원(☎031-250-1521),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보훈병원 진료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위탁병원 진료 (시군별 지정 의료기관)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기타의료지원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 일 때 (생활안정 지원)	보훈가족 심리재활 서비스 지원	심리재활집중센터(☎02-786-7937)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 (전기·수소차)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교통시설 이용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통신요금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
	국가유공자 등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 지원	KB국민은행(☎1599-9999), NH농협은행(☎1588-2100),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등 취업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한법률구조공단(☎054-810-0132)

구분	사업명	문의처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 대상자일 때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면제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급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02-2087-7851), 법무부(☎02-2110-3500)
	법문화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432-6812)
	법률홈닥터	제도 운영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53,3824) 상담 문의 :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
	마을세무사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법률구조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개인회생·파산 종합 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대지급금 제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서민금융콜센터(☎1397)
	미소금융	서민금융콜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콜센터(☎1397)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햇살론	서민금융콜센터(☎1397) : 근로자 햇살론,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 자영업자 햇살론
	햇살론15	서민금융콜센터(☎1397)
	햇살론 뱅크	서민금융콜센터(☎1397)
	햇살론 카드	서민금융콜센터(☎1397)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소상공인 지원 (융자)	소상공인정책자금(☎1357)
금융 관련 지식이 필요할 때 (컨설팅, 교육)	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금융콜센터(☎1397)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02-750-1233~4)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기가족 지원)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대표번호 ☎1522-0365)
	사회서비스원 종합 재가센터	지역 종합재가센터
	가족센터 운영	가족센터(☎1577-9337)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1366)

구분	사업명	문의처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성매매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경기케어센터(☎031-359-0514),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근로자 사회심리 재활 지원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산재보험 요양급여 (재활보조기구)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구분	사업명	문의처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근로자)	근로복지공단(☎1588-0075)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1355)
	농업인 안전보험	NH농협생명(☎1544-4000)
	어업인 안전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SH수협은행(☎1588-4119)
	취약농가 인력 지원 (행복나눔이)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농가 인력 지원 (영농도우미)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02-2080-5424)
	취약어가 인력 지원 (어촌생활돌봄지원)	지역 수협 또는 수협중앙회(☎02-2240-2267)
	취약어가 인력 지원 (어업활동 지원)	각 시도 담당사무소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044-200-5733~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NH농협은행(☎1661-2100), SH수협은행(☎1588-1515), 산림조합(☎1544-4200)
남을 돕다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등 지원	시군구청 사회복지 관련 부서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분	사업명	문의처
기타 특수한 상황이나 입장에 처했을 때	석면피해자 지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1833-7690)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소자 등 자립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670-70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원폭피해자 지원	대한적십자사(☎02-3705-3783)
	진폐근로자 보호	근로복지공단(☎1588-0075)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시도 및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1인가구 지원이 필요할 때	1인가구 사회적관계 망 형성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6)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원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똑똑 두드려서 꼼꼼하게 두루 살펴, 끝까지”

보훈가족 평생 건강 통합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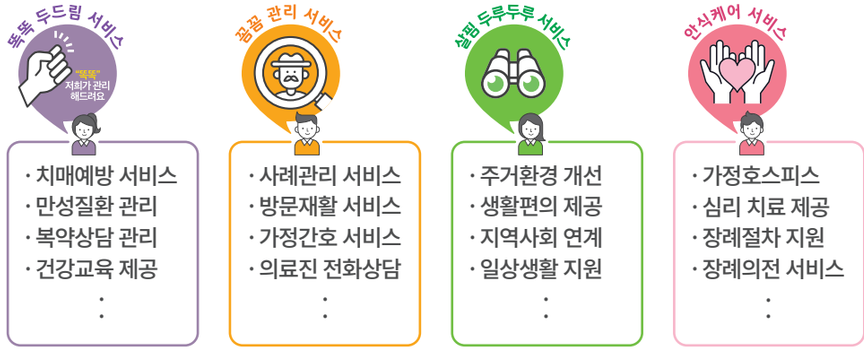

· **중앙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2)2225-1114
· **부산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51)601-6000
· **광주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62)602-6114
· **대구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53)630-7000
· **대전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42)939-0114
· **인천보훈병원** 대표 전화번호 : 032)363-9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Korea Veterans Health Service